

예비안전기준

가정용 섬유제품

부속서 1

(Textile Products)

- 방한대의 추가 안전요건 -

부록 A

(Additional Safety Requirements for Masks for the Protection against Cold)

A.1.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부속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한대 중 부직포가 사용된 제품에 대해 추가로 요구되는 유해물질 안전요건, 표시사항 등에 대해 규정한다.

A.2. 인용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 또는 기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. 이러한 인용표준 또는 기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.

- **ISO/TS 16189** Footwear — Critical substances potentially present in footwear and footwear components — Test method to quantitatively determine dimethylformamide in footwear materials
- **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**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
- **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**

A.3. 안전요건

A.3.1 유해물질 안전요건 유해물질의 기준함유량은 **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1(가정용 섬유제품)**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해야 한다. 부직포로 구성된 부위는 추가적으로 [표 1]의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. 단, 스펀 본드(spun-bonded), 멜트 블로운(melt-blown) 및 스펀 본드와 멜트 블로운이 결합된 복합부직포에 대해서는 [표 1]의 기준치를 적용하지 않는다.

[표 1] 추가 안전요건

유해물질명	기준치
디메틸포름아미드(DMF)	5 mg/kg 이하
디메틸아세트아미드(DMAc)	5 mg/kg 이하

- 주) 1. 디메틸포름아미드(DMF) 대상물질은 N,N-Dimethylformamide(CAS No. : 68-12-2)이며, 디메틸아세트아미드(DMAc) 대상물질은 N,N-Dimethylacetamide(CAS No. 127-19-5)이다.
2. 부직포로 구성된 모든 부위(안감, 중간층, 겉감)에 적용한다.

A.4. 시험방법

A.4.1 디메틸포름아미드(DMF) 및 디메틸아세트아미드(DMAc)의 시험은 ISO/TS 16189 시험방법을 따른다.

A.5. 표시

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취급상 주의사항은 포장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다.

A.5.1 품명 가정용 섬유제품(방한대)으로 표기한다.

A.5.2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안감, 중간층, 겉감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. 단, 부직포의 경우 제조방법(예시 : 스펀본드, 멜트 블로운, 전기방사 등)을 표기하여야 한다.

A.5.3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(수입품에 한함)

A.5.4 제조국명

A.5.5 제조년월

A.5.6 치수¹⁾

A.5.7 취급상 주의사항²⁾

A.5.8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

- 주) 1. 치수는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(예시 : **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**에 따라 마스크를 펼친 후 좌우 대칭이 되도록 세로로 접어 가장 긴 길이인 코편 위의 꼭지점부터 턱 부분 꼭지점까지 측정하여 [별표 1]과 같이 치수를 표시할 수 있다).
2. 부직포가 사용된 경우 "세탁할 경우 사용할 수 없음"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

[별표 1] 치수표시 방법

구분	세로길이
특대형	171 mm 이상
대형	150 ~ 170 mm
중형	136 ~ 149 mm
소형	135 mm 이하